

의안 번호	1722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보고서</h1>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1. 4. 2.(금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4. 2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4. 14.(수)

2. 제안설명 요지(중구청장)

가. 제안이유

-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명예수당 지급 방법을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생활안정 및 예우 강화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

나. 주요내용

- 명예수당 지급방법 중 지급일 변경(안 제7조제1항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

다. 근거법규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경희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명예수당 지급방법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
제반규정 검토한 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큰 거 법 규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(禮遇)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예우의 기본개념)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(戰歿軍警)과 전상군경(戰傷軍警)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(龜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